##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1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윤종오·황운하·한창민

정혜경 • 전종덕 • 문진석

박홍배 • 위성곤 • 황명선

신장식 • 이수진 • 김정호

박정현 • 이용우 • 김태선

이학영 · 김선민 의원

(17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 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 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

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 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 제7호, 제40조제4호의2). 법률 제 호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을 "당사자는"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을 "자기소유의 영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를 유상(그 건설기계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기소유의 영업용으로 등록 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 용으로 대여한 자

제41조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강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한 자제44조제1항제1호의3 중 "자"를 "자(다만, 제41조제10호의2의 임대인

은 제외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한 계약) ①
등에 관한 계약의 <u>당사자(「건</u>	<u>당사자는</u>
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
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	무) ①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2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	자기소유의 영업용으로 등록
<u>를</u>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를 유상(그 건설기계의 운행
	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을
	<u> 포함한다)으로</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한 행정처분) ①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 ② · ③ (생 략)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0. (생 략) <u><신 설></u>

11. ~ 19.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 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u>자</u>

1의4.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세41조(혈취)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강요 등의 방법으로 임
대인에게 제22조제1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대
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u>한 자</u>
11. ~ 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자</u>
(다만, 제41조제10호의2의 임
대인은 제외한다)
1의4.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